

용역계약서

1. 용역명 : 일산대교 2019년 상반기 정기점검 용역
2. 계약기간 : 2019. 6.14 ~ 2019. 6.30
3. 용역장소 :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48-24
4. 계약금액 : 일금 팔백이십만원정 (₩ 8,200,000 / VAT 별도)
5. 대금의지급 : 청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상대자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
6. 계약이행보증 : 계약금액의 10% (계약이행보증서 납부)
7.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1000 분의 1 (매1일)

발주자 일산대교(주)와 계약상대자 (주)명성엔지니어링은 상기 용역업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며, (주)명성엔지니어링은 상기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9 년 6 월 14 일

발 주 자

주 소: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48-24

상 호: 일 산 대 교 주 식 회 사

성 명: 대 표 이 사 김 경 호 (인)

계약상대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69번길 18

상 호: 주 식 회 사 명성엔지니어링

성 명: 대 표 이 사 김 선 무 (인)

계약일반조건

제 1 조 【총칙】 일산대교(주)(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주)명성엔지니어링(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용역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 한 「일산대교 2019년 상반기 정기점검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 【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공사계약서,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으로 구성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규정된 계약일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 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현금 또는 이행(계약)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조 【책임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보상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고 용역 중에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제반 문제를 책임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미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진다

제 5 조 【재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계약한 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와 재하도급할 수 없다.

제 6 조 【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일련의 행위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제 7 조 【과업의 범위】

- ① 본 공사의 과업범위는 「일산대교 2019년 상반기 정기점검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그 외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 8 조 【용역 내용의 변경】

"발주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을 받는 즉시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된 용역 내용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용역비를 변경 할 수 있다.

제 9 조 【기성 지불방법】

-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및 성과품 납품 후 용역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상호 협의하여 지급 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0 조 【선금금의 지불방법】

본 용역의 선금금은 지불하지 아니하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선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제 11조 【지체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내에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용역을 완성치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 분의 1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화의 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용역이 공정표와 같이 추진되지 아니하거나 용역을 소홀히 하여 계약기간내 결과물이 제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재하도급을 하여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② ①항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배상책임을 진다.

제 13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발주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 15조 【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고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 16 조 【분쟁의 해결】 ①공사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일산대교 정기점검
과 업 지 시 서

2019. 6. 14.



일 산 대 교 (주)

과업지시서

I. 과업의 목적

일산대교(주)에서 관리하는 일산대교시설물(1종 및 2종)을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807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II.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2019년 일산대교 정기점검(상반기)

2. 대상시설물

1) 일산대교

교량명	준공연도	연장	교폭	형식
일산대교 본선	2007년 12월 30일	1,589.258m	28.495~44.848m	강합성 상자형교 +소수주형 판형교 +아치형 강상판 라멘교
RAMP - G	2007년 12월 30일	195.561m	6.75m	강합성 상자형교
RAMP - H	2007년 12월 30일	320.0m	6.75m	R.C SLAB교 +강합성 상자형교
RAMP - I	2007년 12월 30일	595.0m	10.25~18.196m	강합성 상자형교+R.C SLAB교+R.C 라멘교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 점검시기는 발주자와 별도 협의

4. 과업의 범위

- 1) 현황조사 및 자료분석
- 2) 시설물의 부재별 육안조사
- 4) 손상 및 결함 상태에 따른 상태 등급 판정
- 5) 국가안전시스템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입력 자료 수집
- 6)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1) “계약상대자”는 설계서{현장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발주처시방서 포함), 내역서 등을 포함한다.}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 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에 언급되어 있으나 설계도면에는 누락되어 있는 (혹은 설계도면에는 언급되어 있으나 공사시방서에는 누락되어 있는) 사항 등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모두 나타나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안전점검을 수행한다.
- 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발주자”가 확실한 해석을 내리기 전에는 해당점검을 수행해서는 안되며, 만일 “발주자”의 해석 전에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안전점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 4) “발주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안전점검이 적정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수행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을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점검한다.
- 7) 안전점검 수행 상 주요사항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계약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으나 상호 의견일치가 어려울 때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 8)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점검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이 사실을 서면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서면통보를 받은 즉시 안전점검 계획을 제출하고 법적 기간내에 수행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9) 안전점검 수행 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야간작업 및 조기작업 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당초 견적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과업변경 및 조정

과업 수행중 “발주자”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 결정하고, “계약상대자”는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 책임한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시비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공사 등 진행상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해당부분의 과업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결정하는 책임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진다.

4. 보안사항

-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 3)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4)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IV. 과업의 세부내용

본 과업의 수행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교량편(국토교통부 2010.12)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자료 수집과 분석 평가

- 1)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자료를 수집, 분석
- 2) 교량의 이력사항과 변형상태 조사 분석, 평가
- 3) 기존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현장 조사를 시행
- 4) 기타 안전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 수집, 분석
- 5)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 수집
- 6) 교량관리시스템(BMS) 정기점검정보 입력 및 점검결과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

2. 제원 및 외관조사

- 1) 시설물의 외관조사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상 정기점검수준의 외관조사 평가 요령에 의한다.
- 2) 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등급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 3) 점검 자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항, 부재시설물, 환경조건(시설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조건), 계획홍수위, 하천명, 도로 및 하천계획, 운행제한여부, 교통사고다발지점 파악, 교량이 포함된 도로선형 분석, 도시계획현황, 기타 주변여건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 4) 주요 부재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외관조사도를 작성한다.
- 5) 제원 및 외관조사시 각종 안전기구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밀하게 조사한다.

3. 시설물의 안전도 평가 및 정밀안전진단 여부 평가

- 1) 손상 및 결함부위의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 2) 결함의 정도, 불량률 등의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손상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 3) 시설물의 사용 제한 및 정밀안전진단 필요 여부 검토

4.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제시

손상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요하는 부재별, 시설물별 총괄표 작성 및 개략공사비 산정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 1)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량의 구조형식별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CHECK LIST)작성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2) 본 과업 수행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3) 구조 부위별 붕괴유발부재나 부위를 명시하고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4) 향후 반기별 정기점검시 점검항목 우선순위를 제안하여야 한다.

6. 보고서 작성 일반사항

-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 및 진단서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의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 2)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 3)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5)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입체단면도와 평면도를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

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6)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 진단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적용기준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 3) 각종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V. 예정공정표

과업기간 : 착수후 2019년 6월30일까지

공 종	정기점검용역										
	14	17	18	19	20	23	24	25	26	27	30
·착수준비											
2. 외관조사											
3. 현장조사자료 정리 및 분석											
5. 보고서 작성											

VI .성과품 제출

종 류	제출시기	내 용	부 수	비고
최종보고서	준공시	-성과품 1식(성과품CD포함)	3 SET	